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2호
2. 제출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2. 7. 13.
4. 회부일자 : 2022. 7. 14.

II. 제안이유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필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적립·조성하기 위함
-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증가에 따른 수입금액 증가로 지출금액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수입계획) 320,767백만원→2,063,776백만원(증 1,743,009백만원)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0원→1,742,300백만원(증 1,742,300백만

원)

○ 이자수입: 2,356백만원→3,065백만원(증 709백만원)

※ 2022년 12월말까지 예상이자수입

2. (지출계획) 320,767백만원→2,063,776백만원(증 1,743,009백만원)

○ 학교시설여건개선(비용자성사업비): 231,702백만원→281,902백만원(증 50,200백만원)

○ 예비비및기타(예치금): 89,063백만원→1,781,872백만원(증 1,692,809백만원)

(단위: 천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항목	2022년 수입액			항목	2022년 지출액			
	기정계획(A)	변경계획(B)	증감(C=B-A)		기정계획(A)	변경계획(B)	증감(C=B-A)	증감율(D=C/A)
합 계	320,767,241	2,063,776,491	1,743,009,250	합 계	320,767,241	2,063,776,491	1,743,009,250	543.4%
교특회계 전입금	-	1,742,300,000	1,742,300,000	학교시설 여건개선(비용자성사업비)	231,702,000	281,902,000	50,200,000	21.7%
예치금 회수	318,411,000	318,411,000	-	기관운영	2,400	2,400	-	0.0%
이자수입	2,356,241	3,065,491	709,250	예비비 및기타(예치금)	89,062,841	1,781,872,091	1,692,809,250	1,900.7%

3. 변경사유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될 예정이나, 학교의견 수렴, 공공건축심의,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이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620억원 증

-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은 개축, 리모델링의 대규모 시설사업으로 설계 이전 공공건축심의,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당해연도 예산 집행이 어려워 이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90억원 증

- 교육시설환경개선은 국가적으로 해소 목표연도가 있는 석면제거(2027년), 내진보강(2029년), 드라이비트해소(2026년)와 석면 천장재 손상을 수반하는 노후 냉난방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함.

※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조 5,213억원 증

IV.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32호로 제출되어 2022년 7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총괄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 제8조¹⁾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 또한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 이상 변경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그 계획을 변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²⁾,

1)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금번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의 지출계획 중 ‘예치금’의 지출금액 890억 6천 3백만원을 1조 7,818억 7천 2백만원으로 1조 6,928억 9백만원(1,900.7%) 증액하였고, ‘비용자성사업비’의 지출금액 2,317억 2백만원을 2,819억 2백만으로 502억(21.7%) 증액하였는바,

이와 같은 기금운용계획의 지출금액 변경은 지방기금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표-1]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정책/단위/세부사업	당초 (A)	변경 (B)	증감 (C=B-A)	증감율 (D=C/A)
수입합계	320,767,241	2,063,776,491	1,743,009,250	543.4%
자체수입	2,356,241	3,065,491	709,250	30.1%
이자수입	2,356,241	3,065,491	709,250	30.1%
기타	318,411,000	318,411,000	-	-
예치금회수	318,411,000	318,411,000	-	-
내부거래	-	1,742,300,000	1,742,300,000	-
전입금	-	1,742,300,000	1,742,300,000	-
지출합계	320,767,241	2,063,776,491	1,743,009,250	543.4%
학교시설여건개선	231,702,000	281,902,000	50,200,000	21.7%
학교시설개선	231,702,000	281,902,000	50,200,000	21.7%
학교시설환경개선	231,702,000	281,902,000	50,200,000	21.7%
기관운영	2,400	2,400	-	-
기본운영비	2,400	2,400	-	-
기관기본운영비	2,400	2,400	-	-
예비비및기타	89,062,841	1,781,872,091	1,692,809,250	1900.7%
예비비및기타	89,062,841	1,781,872,091	1,692,809,250	1900.7%
내부유보금	89,062,841	1,781,872,091	1,692,809,250	1900.7%

나. 수입계획에 대한 검토

- 동 변경안 중 수입계획은 당초 수입금액 3,207억 6천 7백만원에서 2조 637억 7천 6백만원으로 1조 7,430억 9백만원(543.4%)이 증가되었는바, 이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 1조 7,423억원으로 새롭게 편성되고, 이자수입이 23억 5천 6백만원에서 30억 6천 5백만원으로 7억 9백만원(30.1%)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 이 중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 새롭게 편성된 것은 학교교육환경개선비에 대한 2022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액이 2022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고,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등 장기간 소요되는 교육시설 사업의 예산이 동 추경안에서 기금전출금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 한편 이자수입이 증가한 것은 2022년 12월까지의 예상 이자 수입을 반영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2]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수입 계획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22년 수입액 당초(A)	'22년 수입액 변경(B)	증 감 (C=B-A)
[20000]			자체수입	2,356,241	3,065,491	709,250
	[24000]		이자수입	2,356,241	3,065,491	709,250
		[24100]	이자수입	2,356,241	3,065,491	709,250
			[24101]예금이자수입	2,356,241	3,065,491	709,250
[40000]			기타	318,411,000	318,411,000	-
	[42000]		예치금회수	318,411,000	318,411,000	-
		[42100]	예치금회수	318,411,000	318,411,000	-
			[42101]예치금회수	318,411,000	318,411,000	-
[50000]			내부거래	-	1,742,300,000	1,742,300,000
	[51000]		전입금	-	1,742,300,000	1,742,300,000
		[51100]	전입금	-	1,742,300,000	1,742,300,000
			[51102]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1,742,300,000	1,742,300,000
수입 합계				320,767,241	2,063,776,491	1,743,009,250

다. 지출계획에 대한 검토

- 동 변경안 중 지출계획은 당초 지출금액 3,207억 6천 7백만원에서 2조 637억 7천 6백만원으로 1조 7,430억 9백만원(543.4%)이 증가되었는바,

이는 ‘학교시설여건개선(비용자성사업비)’가 2,317억 2백만원에서 2,819억 2백만원으로 502억원(21.7%) 증가하고, ‘예비비 및 기타(예치금)’가 890억 6천 3백만원에서 1조 7,818억 7천 2백만원으로 1조 6,928억 9백만원(1,900.7%)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1) 예치금 편성 현황 및 문제점

가) 예치금 편성 현황

- 예치금이 대폭 증가된 원인은 ‘교육시설환경개선(냉난방개선, 석면 해소, 내진보강, 드라이비트해소)’,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 예산을 기금으로 집행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 먼저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의 예치금은 1조 4,716억 1천 2백만원이 새롭게 편성되었는바, 동 사업은 2021년에 각급 학교의 노후 냉난방기 개선 및 석면 해소 사업을 위해 기금으로 조성되었으며, 금번 변경안에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냉난방개선, 석면 해소, 내진보강, 드라이비트해소 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표-3]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지출계획 현황

(단위 : 천원)

지출계획				
항목	2022년 지출액			
	기정계획 (A)	변경계획 (B)	증감 (C=B-A)	증감율(D=C/A)
합계	231,704,400	1,753,516,250	1,521,811,850	658.8%
학 교 시 설 여 건 개 선 (사 업 자 비 비 용 차 비 성)	231,702,000	281,902,000	50,200,000	21.7%
기 관 운 영	2,400	2,400	0	0.0%
예 비 비 및 기 예 치 금)	0	1,471,611,850	1,471,611,850	-

- 다음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예치금은 기존의 890억 6천 3백만원에서 2,512억 4천만원으로 1,621억 7천 7백만원(182.1%)이 증액되었습니다.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3조 2,341억원을 투자하여 4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국가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30%(9,700억원) 지방비 70%(2조 2,600억원)의 대응투자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표-4]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지출계획				
항목	2022년 지출액			
	기정계획 (A)	변경계획 (B)	증감 (C=B-A)	증감율 (D=C/A)
합계	89,062,841	251,240,241	162,177,400	182.1%
학 교 시 설 여 건 개 선 (사 업 자 비 비 용 차 비 성)	0	0	0	0.0%
기 관 운 영	0	0	0	0.0%
예 비 비 및 기 예 치 금)	89,062,841	251,240,241	162,177,400	182.1%

○ 현재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대상 학교는 총 108개교이며, 서울 시교육청은 금번 변경안에 2021년 사업 대상 26개교의 설계 및 시설비를 위해 1,034억 8천만원, 2022년 사업 대상 17개교의 설계 및 시설비 사용을 위해 총 585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표-5]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대상 현황³⁾

(단위: 개교)

사업유형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개축	91	23	25	18	11	14
리모델링	17	8	7	1	1	0
합계	108	31	32	19	12	14

[표-6]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집행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21대상 학교 중 26개교	2022대상 학교 중 17개교	합 계
설계비 및 시설비	103,480,000	58,500,000	161,980,000

○ 마지막으로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의 예치금은 590억 2천만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추진되기 이전, 2019년에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건물을 개축, 리모델링이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변경안에 동 사업대상 8개교의 설계비 및 시설비로 590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 2023년도~2025년도 대상 학교는 학부모 동의절차 진행후 확정될 예정임.

[표-7] 학교단위 공간혁신 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지출 계획				
항목	2022년 지출액			
	기정계획 (A)	변경계획 (B)	증감 (C=B-A)	증감율 (D=C/A)
합 계	0	59,020,000	59,020,000	순증
학교 시설 여건 개선 (비용자비 사업비)	0	0	0	0.0%
기관 운영	0	0	0	0.0%
예비비 및 기타 (예치금)	0	59,020,000	59,020,000	순증

나) 예치금 편성의 문제점

- 이와 같이 동 기금은 총 3개의 사업(‘교육시설환경개선’, ‘그린 스마트미래학교’, ‘공간혁신’)추진을 위해 예치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 중,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의 예치금이 총 예치금 증액분(1조 6,928억 9백만원)의 86.9%(1조 4,716억 1천 2백만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금번 변경안에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대상 학교의 냉난방 개선 및 석면해소 사업예산을 반영하고, 추가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외단열시스템) 해소 사업을 기금으로 조성하면서 예치금이 크게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중 ‘냉난방개선’ 사업 대상 학교를 2,282개교(4,573억 3천 6백만원), ‘석면해소’ 사업 대상 학교를 620개교(5,445억 7천 2백만원), ‘내진보강’ 사업 대상 학교를 734개교(2,625억 2천 6백만원), ‘드라이비트’ 사업 대상 학교를 624개교(2,629억 6천만원) 선정하였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총 1조 5,273

억 9천 5백만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표-8]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연도별 예산 운용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전체
냉난방개선	371,490,065	27,337,800	20,404,300	38,103,800	457,335,965
석면해소	110,681,348	112,572,677	112,336,473	208,981,880	544,572,378
내진보강	79,628,722	63,617,530	63,002,626	56,277,515	262,526,393
드라이비트	74,158,872	64,492,785	63,036,263	61,271,981	262,959,901
전체	635,959,007	268,020,792	258,779,662	364,635,176	1,527,394,637

○ 동 사업들(냉난방개선, 석면해소, 내진보강, 드라이비트해소)의 경우 기금 설치 이전에는 매년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1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설치되면서 해당연도에 집행되기 어려운 사업의 예산은 기금으로 조성하였고, 금번 변경안에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모든 사업 물량에 대한 예산을 기금 예치금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 냉난방시설 개선, 석면 및 드라이비트(외단열시스템) 해소, 내진보강 사업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4) 및 교육시설법 제31조5)에 따라 교육시설의 지진 및

4)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교육시설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시설법) 제3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화재, 안전 사고 대비를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동 사업을 기금으로 조성한 것에는 별도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 그러나 동 사업의 예치금 증액분 1조 4,716억 1천 2백만원은 향후 2023년부터 2026년에 시행될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교육청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고려하였을 때, 기금 사업 이외 시급한 시설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여부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사업비 대비 시설사업비(기금포함) 비율을 살펴보면 평균 40.7%이나, 기금이 조성된 2021년부터 기금을 제외한 교육사업비 대비 시설사업비 비율은 대폭 축소되어 2021년도 27.4%, 2022년도 28.3%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이는 2021년부터 해당연도에 가용할 수 있는 시설사업비가 크게 감소된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실제 2021년도에 시설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사례가 전년도보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⁶⁾.

1.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사업
2. 제1호 외의 사업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을 개축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조례로 정한 사업

6)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2022.6.15.),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26~27페이지 참고.

[표-9] 최근 5년간 교육사업비 대비 시설사업비 증감

(단위 : 백만원, %)

회계 연도	전체예산	교육비특별회계	기금	교육사업비 (C)	교육비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 + 기금
		시설사업비 (A)	시설사업비 (B)		시설사업비 (A/C)	시설사업비 (A+B/C)
2018	9,151,267	712,890	-	1,949,224	36.6	36.6
2019	9,380,315	771,653	-	1,937,965	39.8	39.8
2020	10,084,661	895,183	-	2,067,774	43.3	43.3
2021	9,741,994	517,413	318,410	1,886,956	27.4	44.3
2022	10,580,269	636,988	258,100	2,249,079	28.3	39.8
전체	48,938,506	3,534,127	576,510	10,090,998	35.0	40.7

[표-10] 2021년 시설사업비 부족으로 이월된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률	사유
학교시설증개축	한천중 도서관 증축사업	286	100%	학교에서는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공사와 병행 추진을 요구하고 있으나 해당 예산 미확보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상명고 도서관 환경개선	200	100%	예산이 요구액보다 적게 교부되어 추가 예산 확보 후 집행 예정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신간호비즈니스고 외벽개선	145	100%	외벽공사시 냉난방기 이전재설치 비용발생 및 안전,공간상의 이유로 공사비의 증가가 예상되나 예산 미확보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정의여고 급식실 샌드위치패널제거	1,299	93%	인건비 및 단가 상승 등의 사유로 사업집행 금액이 부족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대경중 본관동 스프링클러 및 송수구 설치공사	477	100%	옥상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소방시설 확충 구조 검토 결과 중력 하중에 따른 보강공사가 필요하나 예산 미확보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경신고 도서실냉난방개선	92	100%	냉난방개선공사의 선행작업으로 석면해체제거가 필요하나 해당 예산 미확보

- 또한 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서울 시내 학교 건물이 40년 이상 된 학교는 총 497개교이나,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의 개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⁷⁾ 및 공간혁신 사업 대상 학교는 116개교(23.3%)에 불과한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및 공간혁신 사업 대상이 아닌 노후화된 학교들의 증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교육청의 계획 및 예산편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표-11]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현황

(단위 : 개교)

구분	학교별						
	초	중	고	특수	고등기술	각종	합계
공립	196	65	21	0	0	3	285
사립	24	71	109	4	2	2	212
전체	220	136	130	4	2	5	497

- 아울러 학교 노후 시설(화장실, 전기시설, 급식시설개선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경우, 2022년부터 사업추진 절차가 단위사업별 우선순위 선정에서 학교별 우선순위 선정(3년주기)으로 사업 방식이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는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교육환경개선사업 대상 학교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못한 학교에서 시급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대책 방안 및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2021년 최초 선정시에는 총 213개교가 대상이었으나, 이후 학부모 등의 집단반대 민원으로 인해 105개교의 사업이 철회되었음.

○ 이와 같이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시설사업은 기금에 조성된 사업 이외에도 검토되어야 할 사업들이 다수 있으나, 금번 변경안에 예치금으로 조성된 1조 6,928억 9백만원의 예산은 ‘교육시설환경개선(냉난방, 석면해소, 내진보강, 드라이비트해소)’,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및 ‘공간혁신 사업’의 예산으로만 한정되어 있고,

특히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교육시설환경개선’의 경우에는 시급한 사업이라기보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장래 사업 지출을 위해 예치금 편성이 이루어진 것인바,

서울시교육청은 각종 학교 시설사업을 비롯한 교육청 시설사업 전반의 예산 편성 및 규모의 적절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 기금으로의 전출 규모, 기금 사업의 종류 및 예산편성의 적절성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별도로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⁸⁾ 및 교육시설법 제31조 제3호에⁹⁾ 따르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사업으로서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따라 추진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BTL 사업을 추진하면서 2032년까지 총 임대료 1조 6,045억원 중,¹⁰⁾ 2021년도까지 9,972억원을 상환하여 향후 10년간 6,073억원을 지급할 예정인바, 교육청의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동 기금으로 BTL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방안도 고

8)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교육시설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9)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시설법)

제3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 2.(생략)

3. 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4. ~ 6.(생략)

10) 운영비는 별도 상환.

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2]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연도별 예산 운용 계획

(기준: 2021.12.31., 단위: 억원)

구분		기상환액	상환예정액			총 지급 소요액
		2021년도까지	2022년도	2023년도 이후	소계	
임대료	원금	5,477	618	4,806	5,424	10,901
	이자	4,495	140	509	649	5,144
	소계	9,972	758	5,315	6,073	16,045

2) 학교시설여건개선(비용자성사업비) 증가 현황 및 문제점

○ 동 기금 중 ‘학교시설여건개선(비용자성사업비)’ 이 증가된 원인은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중 ‘냉난방개선’ 및 ‘석면해소’ 사업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증가했기 때문으로, 당초 2,317억 2백만원에서 502억원(21.7%) 증가하여 2,819억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냉난방개선’ 및 ‘석면해소’ 사업의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증가한 주요 원인은 당초 동 사업의 예산편성시 실제 예상 소요액의 50~80%만 반영하였기 때문인바,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하여 과거 ‘냉난방개선’ 및 ‘석면해소’ 사업 추진시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상 소요액의 100%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관행을 기금 사업 편성에도 적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의회의 본예산 심의 시 사업 규모 파악을 어렵게 하고 의회의 내실있는 예산 심의를 저해하는 수단으로 작용해 왔던바, 반드시 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편성은 물론 기금 편성에서까지 동일한 폐습을 답습하여 동일 사업의 기금 지출액이 20% 이상 증가되었는 바,
- 서울시교육청은 추경편성을 전제한 본예산 편성의 관례를 철폐하고 본 예산 편성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3] '냉난방개선' 및 '석면해소' 사업 변경 내역¹¹⁾

(단위 : 건, 천원)

구분	기정(A)		변경(B)		증감(B-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냉난방개선	356	79,908,486	361	91,975,647	5	12,067,161
석면해소	184	151,793,514	184	189,893,720	0	38,100,206

[표-14]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지출 계획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22년 지출액 당초(A)	'22년 지출액 변경(B)	증감 (C=B-A)
[06]			학교시설여건개선	231,702,000	281,902,000	50,200,000
	[02]		학교시설개선	231,702,000	281,902,000	50,200,000
		[02]	학교시설환경개선	231,702,000	281,902,000	50,200,000
			시설비	231,702,000	281,902,000	50,200,000
[02]			기관운영	2,400	2,400	-
	[01]		기본운영비	2,400	2,400	-
		[01]	기관기본운영비	2,400	2,400	-
			운영비	2,400	2,400	-
[01]			예비비및기타	89,062,841	1,781,872,091	1,692,809,250
	[01]		예비비및기타	89,062,841	1,781,872,091	1,692,809,250
		[03]	내부유보금	89,062,841	1,781,872,091	1,692,809,250
			예치금	89,062,841	1,781,872,091	1,692,809,250
지출 합계				320,767,241	2,063,776,491	1,743,009,250

11) 지원청별 세부변경 내역은 '붙임1' 참고.

- 이상으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1] 냉난방개선 및 석면해소 사업 교육지원청별 사업 변경 내역

1. 냉난방개선 사업

연번	구분	기정(A)		변경(B)		증감(B-A)		증감내역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동부	15	5,096,051	15	7,038,068	0	1,942,017	증액: 7건
2	서부	15	3,001,668	15	3,472,771	0	471,103	증액: 5건
3	남부	29	6,962,146	32	9,149,504	3	2,187,358	신규: 3건 증액: 5건
4	북부	28	8,307,859	28	8,307,859	0	0	
5	중부	17	3,069,944	17	3,615,985	0	546,041	증액: 6건
6	강동 송파	33	8,340,790	33	10,973,774	0	2,632,984	증액: 14건
7	강서 양천	23	4,082,654	23	5,949,868	0	1,867,214	증액: 11건
8	강남 서초	18	4,947,996	18	5,316,822	0	368,826	증액: 3건
9	동작 관악	33	5,435,822	33	5,670,696	0	234,874	증액: 2건
10	성동 광진	19	4,710,315	19	4,710,315	0	0	증액: 3건
11	성북 강북	28	4,985,783	28	6,069,457	0	1,083,674	증액: 8건
소계 (공립, C)		258	58,941,028	261	70,275,119	3	11,334,091	신규: 3건 증액: 61건
분부 (사립, D)		98	20,967,458	100	21,700,528	2	733,070	신규: 2건
합계 (C+D)		356	79,908,486	361	91,975,647	5	12,067,161	신규: 5건 증액: 61건

2. 석면해소 사업

연번	구분	기정(A)		변경(B)		증감(B-A)		증감내역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동부	9	6,277,175	9	10,948,809	0	4,671,634	증액: 8건
2	서부	15	4,573,126	15	6,349,264	0	1,776,138	증액: 6건
3	남부	18	7,816,132	18	11,688,207	0	3,872,075	증액: 11건
4	북부	18	8,861,224	18	15,515,396	0	6,654,172	증액: 16건
5	중부	9	2,904,788	9	4,828,302	0	1,923,514	증액: 5건
6	강동 송파	19	7,905,158	19	13,485,411	0	5,580,253	증액: 15건
7	강서 양천	17	6,031,695	17	10,039,051	0	4,007,356	증액: 9건
8	강남 서초	11	3,293,267	11	5,047,314	0	1,754,047	증액: 7건
9	동작 관악	14	7,211,795	14	10,759,651	0	3,547,856	증액: 7건
10	성동 광진	8	3,075,067	8	5,391,198	0	2,316,131	증액: 7건
11	성북 강북	9	3,982,269	9	6,011,932	0	2,029,663	증액: 6건
소계 (공립, C)		147	61,931,696	147	100,031,902	0	38,100,206	증액: 97건
		1	41,366,397	1	41,366,397	0	0	포괄편성
본부 (사립, D)		35	14,495,421	35	14,495,421	0	0	
		1	34,000,000	1	34,000,000	0	0	포괄편성
합계 (C+D)		184	151,793,514	184	189,893,720	0	38,100,206	증액: 97건

[붙임2]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88호, 2020. 6. 9., 일부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